

주주 제위

제13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뉴라텍은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별도 안내해 드리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오로라빌딩 4층 뉴라텍 대회의실

※ 별도 주차공간 및 주차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3. 회의 목적사항

가.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지참서류

1) 주주 직접 참석 시 : 신분증

2) 대리인 참석 시 : 임시주주총회 대리인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5. 관련문의 : 뉴라텍 경영관리팀 (02-2088-1983)

2026년 2월 9일

주식회사 뉴라텍
대표이사 이석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당사 정관 제37조에 의거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시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회의 목적사항은 첨부된 “**주주총회 주요안건**”과 함께 읽어 주십시오.
- 보유 주식 수를 모르실 경우, 뉴라텍 경영관리팀에 전화(02-2088-1983) 또는 이메일 (seongjh7@newratek.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표시 방법 : 아래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성, 반대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하단 성명란에 주주님 기명 및 날인(또는 서명)을 해주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를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4층 뉴라텍**)
-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주식회사 뉴라텍 귀하

본인은 2026년 2월 24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뉴라텍”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아래와 같이 귀사 정관 제37조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 | | | |
|-----------------------------|-------------|-----|-------------------------------|
| 주 주 명 | | | |
| 실 명 번 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
| 보 유 주 식 수 | 보통주 []주 | | |
| 제 1 호 의 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 성 | 동봉된 임시주주총회 주요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
| | | 반 대 | |

2026년 2월 일

성 명 (인)

성명란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주총회 대리인 위임장

주식회사 뉴라텍 귀하

대리인 성명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주소 :

본인은 귀사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위임되는 주식의 내용 및 수는 다음과 같으며, 금번 임시주주총회에 위에 기재한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보통주 _____ 주

- 아 래 -

1. 2026년 2월 24일 귀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회의 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주주의 제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
2.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26년 월 일

위임인 : (인)

주식회사 뉴라텍 제13기 임시주주총회 주요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유 : 상장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보다 유연한 투자 유치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개정 전(현행) | 개정 후 | 개정 사유 |
|---|---|---|
| 제9조의1 (주식매수선택권) 3.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법령에 따른 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의1 (주식매수선택권) 3.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법령에 따른 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 적용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 단서로 법령을 추가로 명기하여 저가 발행에 대한 특례 근거를 보강 |
| 제23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23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000,000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총액 증대 |
| (신설) | 제51조의2 (위원회) 1. 당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조항을 추가하여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